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1078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지호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1. 30.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은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은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326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주식회사 D에게 4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87,596,649원과 및 그 중 356,049,673원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원고는 2020. 12. 1. E 주식회사로부터 각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4. 소외 F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10. 13. 500만 원, 2018. 10. 14. 2,600만 원, 2018. 11. 30. 2억 7,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증 및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증여받은 돈 중 일부인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3266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C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가 아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 C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종전 거주지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018. 9. 7. 1억 5,000만 원, 2018. 11. 30. 2억 7,065만 9,100원 등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J와 피고 사이에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주식회사 J가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C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금전거래는 C이 주식회사 J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청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지혜